

제 호

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

○ 기 관 명:

○ 소 재 지:

○ 기관장 성명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
에 따라 위와 같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질 병 관 리 청 장

직인

(뒤쪽)

변경사항 등	
연 월 일	내 용